



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



위상강화
상생발전
가치상승

수신 각회원

(경유)

제목 화물차 속도제한장치, 판스프링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알림

1.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국토교통부 보도자료(2023.5.11.)관련입니다.
3. 국토교통부에서 경찰청, 17개 시·도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`23년 5월 15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, 각 회원님께서 산하 위·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□ 주요내용

- 단속기간
 - `23. 5. 15.(월) ~ `23. 6. 14.(수)
- 중점단속 사항
 -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여부,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불법부착 여부, 화물차 불법튜닝 여부, 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여부
- 단속 및 정리대상 자동차
 - 무단방치 자동차, 무등록 자동차, 불법명의 자동차(이전등록 위반자), 불법튜닝(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),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,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

붙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(2023.5.11.) 사본 1부. 끝.

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
이 사 장 전 재





5월 15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

- 6월 14일까지 한 달간 17개 시·도,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
- 불법 개조, 무등록 자동차, 무단방치 없는 안전도로환경 조성 기대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(경찰, 지자체 등 합동)을 실시한다.
-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.4만대를 적발('21년 26.8만대 대비 6%증가)하고 번호판 영치(100,971건), 과태료부과(29,902건), 고발조치(4,955건)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.
 - 단속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증원되고, “안전신문고 앱”으로 신고가 쉬워짐에 기인하며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이륜자동차(△51%), 안전기준위반(△25.7%), 불법튜닝(△17.9%) 순으로 증가되었다.
- 특히, 이번 집중단속 기간(5.15.~6.14.)에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,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,
 -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, 미사용신고 운행, 번호판 미부착 운행, 번호판 훼손·오염의 불법이륜차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,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도 집중단속한다.
-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,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	책임자	과 장	임월시 (044-201-3855)
		담당자	사무관	박일용 (044-201-3860)

□ 21년 대비 22년 단속실적

(단위 : 건, %)

구 분	'22년	'21년	증감(%)
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	32,760	21,688	▲51.05
안전기준 위반(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)	73,874	58,754	▲25.73
불법튜닝(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)	14,049	11,917	▲17.89
불법명의 자동차 단속(이전등록 위반자)	7,820	6,747	▲15.9
무단방치 자동차 단속	49,712	52,007	▽4.41
무등록 자동차 단속	5,493	6,000	▽8.45
번호판 영치실적	100,971	111,351	▽9.32
소 계	284,679	268,464	▲6.04

□ 22년 단속결과 조치현황

구 분	적발대수	과태료	고발
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	32,760	11,120	2,057
안전기준 위반(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)	73,874	3,985	13
불법튜닝(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)	14,049	3,687	199
불법명의 자동차 단속(이전등록 위반자)	7,820	6,058	2
무단방치 자동차 단속	49,712	-	2,674
무등록 자동차 단속	5,493	5,052	10
소 계	284,679	29,902	4,955